

#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정운 정책연구부장. 723-505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담당 : 권길주 사무국장 736-8583)  
제 목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 보도자료  
날 짜 1997. 7. 12. (주제발제 요약문 포함 총 13쪽)

##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997. 7. 12(토) <sup>29</sup> 국회도서관 강당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金隆日)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이 제도의 확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7월 12일(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김종해 교수(金鐘海, 가톨릭대 사회복지) 주제발제에서 "10년전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결정된 이후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가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이다. 1987년 8월 6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96명을 배치하도록 한 이후 현재 3,000여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전문요원제와 관련된 변화라면 제한적인 증원 이외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 개선책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제도 시행의 근본 목표였던 국가복지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운영을 성취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 개인차원의 노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3.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지업무담당인력의 전문성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공적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앞 장에서 점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이러한 두가지의 과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4. 토론회는 김종해교수의 주제발제 이후 김진학(전문요원동우회장), 윤혜미 교수(동국대 사회복지), 박상신 부회장(사회복지사협회), 이상용과장(복지부 복지정책과), 최홍철(내무부 자치기획과), 김홍신의원(민주당), 황규선의원(신한국당)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별첨자료 ▣ 1. 토론회 진행순서 2. 주제발제문(요약문)

## 토 론 회 순 서

사 회 : 정무성 교수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2 : 00 - 2 : 10 / 인사말 :

김용일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 10 - 2 : 40 / 주제발제 :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김종해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2 : 40 - 3 : 10 / 토 론

김진학 (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회장)

윤혜미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박상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3 : 10 - 3 : 20 / 휴 식

3 : 20 - 4 : 20 / 토 론

황규선 의원(신한국당)

김홍신 의원(민주당)

이상용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과장)

최홍철 (내무부 자치기획과 과장)

4 : 20 - 5 : 00 / 종합토론

##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서론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시행 및 경과

10년전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결정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1987년 8월 6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96명을 배치하도록 한 이후 현재 3,000여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활보호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취약주민의 제반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각자의 근무지에서 기대 이상의 노력과 헌신성으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공공부조사업의 기틀을 다져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을 경과하면서 본래의 취지에 따라 효과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변화하고 있는 여건에 적합한 제도로 전환할 계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현황

#### 1. 정의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발하여 읍면동 행정기관에 배치한 지방공무원(보건복지부 훈령 4호, 95. 2. 13)

#### 2. 직무(보건복지부 훈령 4호, 95. 2. 13)

-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업무 - 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대상자의 생계보호, 자립 지원, 개발상담 및 사후관리
-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업무 - 요보호아동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아동상담 등 지도, 후원자 개발
-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업무 - 조사 및 보호의 결정, 재가노인복지사업, 시설 보호조치
-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업무 - 실태조사, 등록 및 보호의 결정, 상담, 지도 및 시설 입소, 직업훈련, 취업 등 알선, 장애인 지원업무
- 5)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 업무 - 모자가정 실태조사, 상담, 지도, 보호에 관한 지원
- 6)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3.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방안 및 배치 기준

<표 1>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및 배치기준

	'90	'91	'92
배치인원(누계)	228(324)명	1,676(2,000)명	2,000(4,000)명 이상
배치기준	-대도시: 200가구이상 밀집지역에 1인씩 배치	-6대도시: 100-300가 구당 1명, 추가 200 가구당 1명 추가 -기타: 250가구당 1명	-전국 읍·면동에 1인 씩 배치 -밀집지역 추가배치

<표 2> 91년도 배치 기준

지역	배치 기준	배치인원
6대도시	지소특총 100가구이상의 동에 배치,	869명(324명)
인구 50만이상 도시 및 도청소재지	200가구당 1명씩 증원	195명
9개도	지소특총 300가구 이상의 읍면동에 1명씩 배치(경기도는 100가구 이상)	936명 (계 2,000명)

### 5. 전문요원 배치 현황

<표 3> 연도별 배치 현황

년 도	배치계획	배치인원
1987	96	49
1988		47
1990	228	228
1991	1,676	1,676
1992	2,000	481
1993	519	
1994		(8급) 519
누 계	4,519	3,000

- 1991. 7 보사부훈령 62호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1992. 1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 10조, 시행령 14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설치 근거 마련
- 1995. 2 보건복지부 훈령 4호로 동 규정 개정

<표 4> 지역별, 직급별 배치 현황

	지방별정 7급	지방별정 8급	계
서울	325	11	336
5개 광역시	574	40	614
9개 도	1,582	468	2,050
계	2,481	519	3,000

## II. 전문요원의 직무 수행 실태

### 1. 담당 가구수

<표 5> 전문요원 1인당 생활보호 담당 가구수

가구수	빈도(%)
100가구 이하	6( 2.6)
101-200가구	108(46.3)
201-300가구	87(37.3)
301-400가구	16( 6.9)
400가구 이상	16( 6.9)
평균	247.1가구

출처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 2.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표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 비중

	도시	농촌
생활보호 업무	48.33	55.26
·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22.54	18.34
지역복지 업무	10.79	7.34
보건위생업무	3.57	5.50
일반행정 업무	14.75	13.53

자료 : 남세진, 조홍식, 도시·농촌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과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지역복지에는 이웃돕기, 지역의료보험업무 등이 포함됨)

전문요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보면 관련 업무는 70%정도에 불과하며, 생활보호 업무만을 전담해도 과중한 업무에서 30%정도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7> 전체 업무중 생활보호 업무의 비

업무의 비율	빈도(%)
35%이하	27(13.1)
36-55%	81(34.3)
56-75%	83(35.2)
76%이상-95%	28(17.4)
평균	56.4%

출처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 3. 서비스의 제공

<표 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정도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윤혜미	남세진
서비스 제공 정도	자주 한다	4.2	3.2
	비교적 자주 한다	31.1	35.7
	가끔 한다	35.7	39.8
	드물게 한다	16.0	15.3
	거의 못한다	13.0	6.0
서비스의 질적 수준	매우 높다	1.7	0.8
	높은 편이다	17.8	23.4
	보통이다	47.0	51.6
	낮은 편이다	28.0	22.2
	매우 낮다	5.5	2.6

출처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남세진, 조홍식, 도시·농촌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과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1994

<표 9> 사회복지서비스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윤혜미	남세진
시간적 여유의 부족	78.8	32.8
자원·의뢰기관의 부족	51.7	37.3
상사·동료의 몰이해	27.1	12.4
서비스 관련 지식의 부족	20.8	13.3
내 업무가 아니므로	4.7	.
생활보호 업무때문	.	15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0.8	13
기타	8.9	15

출처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남세진, 조홍식, 도시·농촌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과 직무만  
족에 관한 비교연구, 1994  
(윤혜미의 결과는 복수응답임)

#### 4. 전문요원의 직무만족

<표 10>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

정말 그렇다	11.4
그런 편이다	23.6
그지 그렇다	3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5
전혀 그렇지 않다	7.6

출처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표 11> 전문요원의 이직 의도

	3년후에도 전문요원으로 일할 것이다 <sup>1)</sup>	나는 이 기관을 그만두기를 원한다 <sup>2)</sup>	나는 실제로 이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sup>2)</sup>
정말 그렇다	30.1	3.3	3.0
그런 편이다	25.8	11.1	10.8
그저 그렇다	25.0	25.7	24.3
별로 그렇지 않다	12.7	33.5	30.2
전혀 그렇지 않다	6.4	26.3	31.7

출처 : 1)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2) 김성한, 한국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의도 결정요인, 1997

### III. 전문요원제도의 효과

#### 1. 대상자의 추이로 본 효과

전문요원들의 업무의 효과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변화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그동안 엄정하지 못했던 대상자의 선정을 전문요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문요원들이 배치된 동사무소의 행정책임자에 대한 조사에서 전문요원배치 후에 생보대상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12> 전문요원 배치후의 생보대상자의 태도와 수의 변화

태도 변화	매우 좋아졌다	13.4
	좋아진 편이다	59.9
	그저 그렇다	21.4
	나빠진 편이다	3.7
	매우 나빠졌다	1.6
수의 변화	매우 감소하였다	14.5
	다소 감소하였다	51.1
	마찬가지다	27.4
	다소 증가하였다	5.9
	매우 증가하였다	1.1

출처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동사무소의 행정책임자에 대한 조사 결과임)

생활보호대상자의 추이에서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요원이 처음 배치된 87년 이전보다 그 이후의 생보대상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문요원이 본격적으로 배치된 91년과 92년 이후에 많이 감소한 것은 전문요원제도의 도입 효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앞의 표에서 본 것처럼 수의 감소이외에도 생보대상자의 태도가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문요원제도 도입의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3> 생활보호대상자 추이(단위: 천명)

	'82	'84	'86	'88	'90	'91	'93	'94	'95	'96
시설보호	52	60	71	75	81	82	83	81	78	76
거택보호	282	282	284	318	339	338	338	320	307	296
자활보호	3,085	2,214	1,819	1,917	1,835	1,826	1,580	1,501	1,370	1,134
계	3,419	2,214	2,174	2,310	2,256	2,246	2,001	1,902	1,755	1,506
(전인구대비%)	(8.7)	(6.3)	(5.3)	(5.4)	(5.3)	(5.2)	(4.5)	(4.3)	(3.9)	(3.3)

출처: 이정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활성화 과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향후 역할 정립 세미나 자료집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의 감소를 전문요원의 효과로 전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문요원의 도입 목적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또한 대상자의 변화추이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 추이의 경향을 보면 시설보호는 93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94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거택보호는 81년-85년까지는 동일하고, 86년-89년사이에는 증가한다. 그러나 91년-93년동안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되 94년이후 감소한다. 자활보호는 87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82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전문요원의 배치와 무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93년이후의 감소는 현 정부들어 사회복지부문의 재원이 감소한 반복적 정책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전문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지는 않으나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자활측면의 효과성

전문요원들은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생활보호사업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주로 생활보호제도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요원들도 생활보호사업과 관련된 규칙들이 부족하고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14> 생활보호사업의 자활측면의 효과성

매우 효과적이다	0.4
효과적인 편이다	11.6
그저 그렇다	30.9
비효과적인 편이다	46.8
매우 비효과적이다	10.3

출처: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표 15> 생활보호사업 규칙에 대한 태도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규칙이 애매하다	42.9	41.6	12.6	2.9	0
규칙이 부족하다	26.5	35.4	26.1	10.5	1.7

출처 : 윤해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방안, 1991  
 결국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의 감소나 자활이라는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문요원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다.

### 3. 업무상의 효과

전문요원 도입의 효과는 생활보호 대상자 수의 감소라는 양적 변수보다는 전문요원의 업무수행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전문요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하에서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6>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일반 사회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전문성)의 차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 사회담당 공무원에 비해)

	자산조사의 엄정성
성	본인 담당의 정기책정 비중이 크다 본인 담당의 추가책정 비중이 크다 소득기준 적용이 덜 철저하다
특구 대응성	추가책정 가구수가 많다 특례기준에 의한 책정 가구수가 많다 보호변경 가구수가 많다 기준에 적당하지 않은 생활보호 희망자를 책정해주거나 타기관에 의뢰, 격연하는 것에 더 적극적이다 기준에 적당하지 않은 생활보호 희망자를 책정해준 가구수가 더 많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더 많다
대인서비스제공	실제 상담가구수가 더 많다 인주일 평균 상담 시간이 더 많다 요청시마다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전체 상담중 면접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대상자가 더 다양하다 전문적 서비스의 질을 높게 평가한다
자원이용	지역사회자원 이용 빈도가 더 높다 재가복지센터를 더 자주 이용한다

출처 : 송성자, 박경숙,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일반 사회담당 공무원의 생활보호업무수행 책임성 차이와 그 설명 요인들, 1996

위의 표를 보면 전문요원들의 업무 수행방식은 기존의 행정공무원들의 업무 수행방식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글자모양이 펼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규정에 얽매인 업무방식으로는 어려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방식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 IV. 전문요원 직무수행상의 문제점

연구자	직무수행상의 문제점
김현숙	과중한 업무 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 직장 상사의 낮은 이해도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동료 직원들의 비협조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의 미흡
이용교	생활보호외의 업무 과중 전문적 서비스의 미흡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와 책정의 비전문성 낮은 보호수준
주정미	생활보호외의 업무 과중 서비스의 세공보다는 행정애 치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중한 업무(담당가구의 과다, 타업무의 경입) 자산조사의 불철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낮은 수준의 대인서비스 불만족스러운 교육 훈련
김진학	별정7급으로 한정되어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고 사기가 침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의 저하로 업무의 정체와 타성 초래 전문요원간의 공식적인 위계질서 없어 직종내 관리체계 및 중간관리자 부재 시군구 및 동에서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직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업무의 경직 교육 및 정보교류 기회의 부족 업무과다로 근무여건 열악
이정호	전문요원의 직무분담 불분명 상사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문적 사업추진 곤란 일반 행정직과의 협조 부족 동반장과의 협조 미흡 지역사회의 자원부족으로 서비스에 어려움 처우 및 역할에 대한 기대 미흡 근무조건의 열악 신분에 대한 장래성 불분명

김현숙,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1990

이용교, 일선 행정기관 사회복지 담당자의 직무에 관한 연구, 1990

주정미, 일선공적부조담당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방향, 1991

(출처; 원석조, 생활보호사업의 분세집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 사회복지 '92 여름호에서 인용)

김진학,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사회복지직업 실행방안, 사회복지 '94 겨울호

이정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근무여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91 전문요원 연찬회 자료집

## 결론 :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전망 및 과제

### 1. 공적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은 행정효율을 추구하는 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이나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장 모두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성있는 일이다. 특히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현행 체계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제의 실시, 행정전산화의 추진과 함께 전반적인 행정체계 효율화과정에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 2. 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 정립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로서 일반행정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별정직으로서 승진의 기회가 없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속에서 전문직의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다. 그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1992. 12), 국가공무원 임용령의 개정(1993. 9)을 통해 행정직군내에 사회복지직렬이 신설되었으나, 대체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당면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직렬의 시행, 둘째, 기존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사회복지관련직의 사회복지직 전직에 관한 문제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사회복지직렬 시행은 적정규모와 수요를 고려한 점진적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모든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보다 시급한 부분은 두번째 기존 복지관련 별정직 공무원의 전직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별정6급 운영과 사회복지직렬 임용방안'을 개선과제로 확정하였고('95. 9),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건의하는 등('97. 5)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내무부, 재정경제원의 견해가 조정되지 않고 전직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 따라 별다른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건비부담의 국비 보조를 둘러싼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의 입장차이, 타 별정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명분으로 한 내무부의 기피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여러가지 무리를 예상하고도 비교적 직급이 높은 별정7급으로 배치했을 때는 정치적 의도로 시도된 제도가 아닌 이상, 업무의 전문성 및 특성을 인정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직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인건비의 지방비 부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 관장되는 별도의 행정체계를 수립하게 된다면 그 때는 예산부담의 주체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를 볼 때, 타 별정직도 전문성이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의 전직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별정직으로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일반행정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볼 일이다. 또한 7, 8급의 직급이 일반행정직과 비교할 때 너무 높아 곤란하다면 보다 융통성있는 방안은 충분히 고안될 수 있다. 일반행정직의 평균 승진 년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시기에 따라 적절한 직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공적 복지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 1) 공적 복지업무영역의 명확화 및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2) 업무 효율화를 위한 환경 조성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확보되어야

서 읍·면·동 단위의 축소가 모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작은정부의 지향, 공공부조의 수준과 복지서비스 개발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지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행정효율화의 명분으로 전반적인 공공기구 축소의 경향에 따라 기존 체계의 규모조차 축소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공공부조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기존 편견이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업무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접촉하며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충족되어야 하고, 일정한 규칙이나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융통성있는 대처가 필요한 특수한 성격을 지녀, 전문적 자질을 갖춘 인력이 담당해야 함을 공감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어야 행정기구축소라는 명분이 우선되지 않고, 개혁적인 방안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지출부문이 큰 복지업무에 대해서 정부간 책임회피·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달체계 선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개편의 틀을 짜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업무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중앙에서 공급해야 할 사업과 제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하지 않아야 하며, 내무부는 행정조직, 인력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할 때 몇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회복지관계자를 비롯하여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공무원 등 대부분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대안이지만, 소요비용과 관련부처의 입장 차이로 인한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문제제기만 지속될 뿐 시범사업의 대안으로도 채택되지 않고 있다.

둘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형태의 설치이다. 시범사업의 평가는 보건·복지 각 전달체계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의 최종단계인 '조직통합'을 시도하는 데는 여러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복지부문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시·군·구 본청의 복지업무를 포함하여 전체 복지관련조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 각 부문간 정보교환과 업무제휴, 협조프로그램 개발 등이 충분한 상태에서 상시적인 통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순조로운 절차라는 견해는 매우 설득력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2000년대에는 행정전산화, 전자주민카드제의 도입과 정부기구 축소에 따른 행정체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어차피 읍·면·동사무소의 중심 업무로 복지분야가 부상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조직체계를 확고하게 하자는 입장이 있다.

이 가운데 최선안은 고려되는 측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복지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상정할 때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복지업무도 업무담당자간 상호교류와 협조가 가능한 조직체제로 짜여질 때 다양한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경험을 참고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모여 일할 수

할 부분이 있다.

첫째, 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극히 협소하게 이용되고 있는 주민전산망 시스템을 기반으로 복지업무를 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기존 업무부담이 경감될 경우, 전문적 대인서비스 제공에 할애할 여력이 확보될 것이다.

둘째, 현재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조정하여 전국 읍·면·동에 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sup> 현재 부여되고 있는 직무의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생활보호 관련업무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포괄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 복지욕구의 확대에 따른 보편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인 순환보직제를 마련하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도 전문요원이 근무하여 일관성있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나 자활효과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효과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공공부조제도 자체의 비효율성으로 전문요원들의 노력의 결과와 성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직제와 규정에 충실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이나 자활 지원 등이 업무담당자의 전문적 자질이나 재량 이전에 근거 법·제도의 원리와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1) 김영삼대통령은 '95년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1인 이상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